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27. 이달회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2.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9. 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달회의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장지원)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사무를 이양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 및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권한의 이양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사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주체의 책임과 권한 아래 해당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상 사무수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개정해야 함¹⁾.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 주체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위임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에게 이전하는 권한의 위임과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의 이양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해당 사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양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된 권한의 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입법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경과 및 제도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2. 1. 13.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이양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및 사무권한 이양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2022. 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았으나, 2023. 3. 폐지규약에 따라 해산되

1) 참고로, 2021. 1. 1. 시행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은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사무를 이양하였음.

었고, 2024. 12.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함에 따라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 중에 있음.

셋째,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확대를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위임을 통해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의 적극적 위임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당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이해식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